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22.

발 의 자 : 기동민 · 한준호 · 김희재
이정문 · 김영배 · 인재근
김원이 · 황운하 · 강훈식
조오섭 · 정춘숙 · 도종환
양정숙 · 박용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,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주 본인이나 평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. 아울러,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

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,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2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”를 “관리업자(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자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”를 “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”를 “관리업자”로 한다.

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단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제8항 중 “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”을 “제2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4호 중 “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”를 “관리업자로”로 한다.

제50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

7의3.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

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3.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리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<u>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</p>	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관리업자(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자는 제외한다)-</u> ----- -----.</p> <p><u>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단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③ 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</u></p>

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생략)

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략)

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-----

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관리업자-----

-----.

제26조(소방시설관리사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제29조제2항-----

-----.

제49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

5. ~ 7. (생략)

제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8. ~ 11.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4. -----관리업자로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벌칙)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

7의3.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

8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및 조

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</u></p> <p>11. ~ 1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관리업자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1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